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47

발의연월일: 2023. 6. 23.

발 의 자 : 윤준병 · 윤재갑 · 강득구

김영배 · 양정숙 · 민형배

김성환 · 양경숙 · 전해철

김수흥 · 서영교 · 오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 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	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u>에서</u>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u>(이하 "학교"라 한다)에서</u>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